

[대학원 학위 논문에 관한 세칙]

[시행일 2024.11.12.]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세칙은 백석대학교 「대학원 학위수여 규정」에 따른 학위논문 및 졸업 관련 심사 등에 관련된 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장 논문지도

제2조(논문지도교수의 자격) ① 본 대학의 소속 교원은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논문지도교수가 될 수 있다. 다만, 논문지도 중에 교원이 퇴직을 한 경우 외부 인사로 구분하고 위촉할 수 있다.

② 논문지도교수는 논문연구계획서 제출 학기를 기준으로 학생의 논문지도학기(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3학기 이상, 신학박사과정과 석사과정은 2학기 이상) 이상의 재직기간이 남아 있어야 한다. 단,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별도의 승인을 받아 예외를 인정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논문지도 학기는 연속으로 진행되어 정해진 지도 학기를 충족하여야 한다.

제3조(논문지도교수의 신청) ① 논문을 쓰고자 하는 학생은 논문연구계획서 제출 시 희망 논문지도교수를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논문지도교수는 논문 분야 전공 관련 교수가 담당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4조(논문지도교수의 배정) 효과적인 논문지도를 위하여 논문지도교수 1명이 담당할 학생의 수는 한 학기당 10명 이내로 제한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다.

제5조(논문지도교수의 변경)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논문지도교수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.

제6조(논문연구계획서) ① 논문지도를 받고자 하는 학생은 정해진 기간 내에 논문연구계획서(소정서식)를 대학원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논문연구계획서 제출은 아래 학차부터 할 수 있다. 다만,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1개 학기를 먼저 신청할 수 있다.

대학원	과 정	신청학차	
일반대학원	석 사	2년(4학기제)	2
		2.5년(5학기제)	3
	박 사	3	
기독교전문대학원	석 사	2	
	박사(신학[Ph.D.])	2	
	박사(신학 이외)	3	
	석박사통합	5	
신학대학원	목회학	4	
실천신학·교육·보건복지·상담·문화예술대학원	석 사	3	

제7조(논문지도비) 논문지도를 받고자 하는 학생은 매학기 초 정해진 기간 내에 논문지도비를 납

부하여야 한다.

제8조(논문지도 횟수) 논문지도는 학기당 3회 이상이어야 한다.

제9조(논문지도 기간)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3학기 이상, 신학박사과정과 석사과정은 2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아야 한다. 필요한 경우 지도교수와 학생과 협의하며 지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10조(논문지도결과보고서) 논문지도교수는 결과보고서를 해당 학기말에 전산시스템에 입력,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1조(논문지도비, 논문심사비 책정) 논문지도비 및 심사비는 [별표]와 같다. 단, 외국어트랙의 논문지도비와 심사비는 별도로 정한다.

제12조(실험실습비) 논문작성을 위해 실험실습이 필요할 때에는 별도의 실험실습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
제3장 심사를 위한 논문 제출

제13조(학위 심사용 논문 제출자격) 각 학위과정에 있어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학생은 심사용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.

- ① 각 대학원의 해당 시험(종합시험, 외국어시험)에 합격한 자.
 1. 기독교전문대학원과 일반대학원의 경우 종합시험,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
 2. 신학대학원을 제외한 특수대학원의 경우 ‘연구방법론’ 또는 이와 유사한 과목을 수강하고, 종합시험에서 이를 포함한 두 과목을 합격한 자
- ② 각 과정별 수업연한 이상 등록을 필한 자
- ③ 「대학원 학칙」에서 규정하는 수료 학점을 모두 이수하고, 그 평균 성적이 B 이상인 자
- ④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3학기 이상(신학박사과정 2학기 이상), 석사과정 2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(다만, 가심사에 한하여 위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제출 가능)
- ⑤ 해당 학위과정 재학연한을 초과하지 않은 자
- ⑥ 학위청구논문 제출학기의 논문지도비를 납부하고, 논문지도를 받고 있는 자 (단, 가심사는 논문지도교수의 승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.)

제14조(학위청구논문 제출) 심사용 학위청구논문은 다음 세가지 사항을 각각의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함으로써 제출된 것으로 본다.

1.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(지도교수 승인-종합정보시스템)
2. 과제본 된 심사용 학위청구논문(석사 3부, 박사 5부)
3. 논문심사비 납부(은행 납부)

제15조(학위청구논문 제출기한) ① 학위청구논문은 해당 학위과정 수료학기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.

- ② 수료자의 경우 각 과정별 재학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영구수료(예정)자가 논문 제출을 원할 경우 대학원장의 허락을 받아 1년의 재학연한을 부여할 수 있으며, 이때 해당과정의 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 영구수료자에게 부여하는 재학연



한은 2회(2년)를 초과할 수 없다.

제16조(수료자의 논문지도) <삭 제>

제4장 학위청구논문 심사 및 위원회 구성

제17조(논문심사위원) ①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논문지도교수를 포함하며 석사과정 3명, 박사과정 5명을 지도교수의 추천과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한다.

1. 일반대학원, 기독교전문대학원
 - 가. 교내·외 대학교 전임교원
 - 나. 박사학위를 소지한 본교의 겸임교원, 강사
 - 다. 위 가목 내지 나목에 준하는 경력자
2. 특수대학원
 - 가. 교내·외 대학교 전임교원, 겸임교원, 강사
 - 나. 위 가목에 준하는 경력자

② 심사위원 일부는 필요에 의해 전공 외부인사로 할 수 있다. 단, 전공 외부 심사위원은 석사 1명, 박사 2명을 초과할 수 없다. 백석대학교 퇴임교원의 경우는 내부 심사위원으로 인정하며, 외국어트랙의 경우 외부 심사위원 수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.

③ ②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경우 교내 유사전공 전임교원을 내부심사위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.

④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은 퇴직, 휴직, 사망,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 변경할 수 없다.

제18조(심사위원장) 심사위원장은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가 맡으며, 심사위원과 동등한 의결권을 갖는다. 다만, 해당 논문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다.

제19조(심사방법) ① 학위청구논문 심사는 가심사, 예비심사와 본심사로 이루어진다. 석박사통합과정은 박사과정에 준하여 심사한다.

② 가심사는 매 학기 정해진 기간에 실시하며 논문 주제의 타당성, 연구방법, 논문 체계, 논문 내용 등을 심사한다.

③ 예비심사와 본심사는 매 학기 정해진 기간에 실시하며 논문 내용 등을 심사한다.

④ <삭 제>

⑤ 본심사는 공개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의해 그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.

⑥ 가심사, 예비심사 결과는 합격, 불합격으로 판정하며, 석사과정은 심사위원 2명 이상, 박사과정은 4명 이상으로부터 합격 평가를 받은 경우 합격으로 한다.

⑦ 본심사는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, 석사과정은 심사위원 2명 이상, 박사과정은 4명 이상으로부터 80점 이상의 평가를 받은 경우 합격으로 한다.

⑧ 가심사, 예비심사, 본심사는 같은 분야 및 주제에 대한 논문이어야 하며, 분야 및 주제가

변경될 경우 가심사부터 다시 제출해야 한다.

제20조(결과보고) 심사가 완료되면 각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정해진 기간내에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대학원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21조(재심사) 학위청구논문 심사에서 불합격된 논문은 논문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수정 보완 후, 다음 학기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.

제22조(논문의 수정확인) 본심사에 통과된 논문이 제책 이전에 논문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수정 보완하였을 경우 수정,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해당 심사위원과 심사위원장의 최종확인을 받아야 한다.

제5장 학위논문 작성 및 제출

제23조(논문 체계) 학위논문의 작성, 인쇄 및 제본은 「대학원 논문 작성지침」에 따른다.

제24조(논문의 제작) 모든 심사에 통과된 학위논문의 규격·조판·제본은 「대학원 논문 작성지침」에 따른다.

제25조(논문의 제출) ① 학위청구 논문심사에 통과된 학생은 본 대학원에서 규정하는 「대학원 논문 작성지침」에 따라 제본된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최종 논문의 제출 시기는 매년 6월과 12월의 정해진 기간까지로 한다. 다만, 형편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.

③ 제출하는 논문 중, 1부는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 날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.

④ 논문제출 시, 논문이용동의서(소정양식)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
⑤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위논문 제출기한을 1개 학기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연장된 자에게는 학위 논문을 제출한 학기에 학위를 수여하며 그 전까지 학적상태는 수료로 둔다. 인쇄 논문을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한 학생에 대해서는 동 학기에 학위수여를 보류하며, 자동적으로 다음 학기 졸업예정자로 간주된다.

제26조(논문의 공표) 박사학위논문의 학위수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표하여야 하되, 도서관에서 디지털 학술정보 유통시스템(dCollection)에 등록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.

제6장 지도자와 연구자의 책임과 의무

제27조(연구윤리) ① 논문지도교수는 학생이 논문을 창의적으로 연구하고, 연구윤리를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성실히 지도하여야 한다.

② 논문연구자는 학위논문의 내용, 제목, 목차 등을 작성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자신의 연구 아이디어 또는 자신의 연구 데이터에 기초하여 자신의 문장으로 표현하여야 한다.

③ 학위논문에서 표절, 중복게재, 대필 등의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학생 및 지도교수를 징계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세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세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1. (시행일) 이 세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기타 석박사통합과정의 학위 논문에 필요한 사항은 박사과정에 준하여 운영한다.

부칙

이 세칙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세칙은 2010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세칙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세칙은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세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세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세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세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세칙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세칙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세칙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세칙은 2024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 논문지도비, 심사비 및 경비 지급액

1. 논문지도비 및 경비 지급액

(기준: 1인당, 단위: 원)

대학원	과정	학기당		비고
		지도비	논문지도교수 지급액	
전 대학원	박사, 석박사통합	150,000	150,000	
	석사	70,000	70,000	

2. 논문심사비 및 경비 지급액

(기준: 1인당, 단위: 원)

대학원	과정		학기당				비고
			심사비			심사위원 지급액	
			심사비	행정비	합계		
전 대학원	박사, 석박사통합	가심사	250,000	10,000	260,000	50,000	심사위원 5명
		예비심사	250,000	-	250,000	50,000	
		본심사	500,000	-	500,000	100,000	
	석사	가심사	90,000	10,000	100,000	30,000	심사위원 3명
		예비심사	90,000	-	90,000	30,000	
		본심사	150,000	-	150,000	50,000	

3. 졸업연주회, 학위과제 심사비 및 경비 지급액

(기준: 1인당, 단위: 원)

대학원	과정	학기당		비고
		심사비	심사위원 지급액	
문화예술대학원	석사	150,000	50,000	심사위원 3명